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87

발의연월일: 2024. 7. 4.

발 의 자:박 정·이용우·김태선

어기구・송옥주・김병기

이기헌 • 강유정 • 김정호

이학영 • 박해철 • 박홍배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나 임신기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등을 사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유급휴가 산정 때 불이익을 받고 있음. 합계출산율이 2018년 1.0명 아래로 감소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 상황에서 저출산 원인 중 출산·보육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이러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확대가 필요함.

한편 보건복지부가 운영하고 있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 따르면, 임신기간 13주까지를 초기, 27주까지를 중기, 28주부터 후기로보고 있는데, 초기에는 유산 위험, 후기에는 조산 위험이 있어 이로부터 임산부와 태아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복지포

럼의 통계에 따르면, 2011년 6%였던 조산율이 2021년 9.2%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조산율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임.

이에 근로자가 임신기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등을 사용할 때도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재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3주 이내 또는 28주 이후로 확대해, 유산과 조산의 위험으로부터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60조제6항제4호·제5호·제6호 신설 및 제74조제7항).

법률 제 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6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 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 6.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제74조제7항 본문 중 "12주"를 "13주"로, "36주"를 "28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6항제4호, 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 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 ⑤		
(생 략)	(현행과 같음)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6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			
으로 본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8조의2제1항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여 단축된		
	<u>근로시간</u>		
<u><신 설></u>	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u>단축된 근로시간</u>		
<u><신 설></u>	6.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u>단축된 근로시간</u>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 ⑥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 ⑥		
(생 략)	(현행과 같음)		
⑦ 사용자는 임신 후 <u>12주</u> 이내	⑦ <u>13</u> 즉		

또는 <u>36주</u> 이후에 있는 여성 근
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
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
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
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
용학 수 있다

⑧ ~ ⑩ (생 략)

<u>28</u> 辛
⑧ ~ ⑩ (현행과 같음)